

# DREAM LAW

NEWSLETTER

---



## Season's Greetings

2021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도 한결같은 자세와 세심한 업무처리로 의뢰인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간들이지만, 2022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아그네스 김 변호사, 법무법인 드림 직원 일동

### TAKE A LOOK INSIDE

- 영주권자 해외여행시 필요한 신분증명 서류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해외여행 후 코비드 테스트 규정
- 신체검사서 의사서명 60일 이내 규정 일시적 면제
- 시민권 신청 자격과 영어시험 면제 요건
- 이민국 주소 변경 신청 안내
- 영주권 조건 해제 신청
- 이민국 업데이트: H 와 E 배우자 노동카드와 기간 자동연장

### CONTACT

505 E Golf Rd Ste H  
Arlington Heights, IL 60005  
[www.dream-law.com](http://www.dream-law.com)

Tel. 847-357-1358

General Inquiry:  
[imin@dream-law.com](mailto:imin@dream-law.com)

NIW Evaluation:  
[eval@dream-law.com](mailto:eval@dream-law.com)

## 영주권자의 미국 입국시 신분증명 서류

- **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영주권 카드:** 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영주권 카드 (PRC 또는 “Green Card”)를 소지한 경우, 추가 서류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 허가서 (I-327):**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추가 서류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본 소지)
- **만료된 영주권 카드:** I-797 연장 신청 접수증을 소지한 경우 위약금 없이 탑승 가능합니다. 영주권 연장 신청서 접수증인 I-797 접수증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사본은 신분증명 서류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SB-1 Visa:**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Returning Resident Visa 소지자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소지한 경우, 추가 서류 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여행

- **180 일 미만 해외 방문:**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180 일 이상 1년 이내의 해외 체류:** 영주의사를 포기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 **1년 이상 해외 머무를 경우:**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출국 전 재입국 허가서 신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 CDC 해외 여행후 코비드 검사 의무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CDC) 오더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비이민, 비시민권자들은 탑승 전 코로나 백신 접종 카드를 보여줘야 합니다.

2021년 12월 6일부터 미국 입국하는 만 2세 이상의 모든 해외 입국 승객들은 아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미국 입국 전 하루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 만약 코로나 19 확진 후 최근 회복된 경우 회복을 증명하는 서류 → 출국 전 90일 이내 받은 양성 판정 결과지와 의료진 또는 보건 공무원의 여행 허가 편지

## 미국 입국 통제

2021년 11월 29일부로 미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때문에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짐바브웨에서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에게는 입국 통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 I-693 신체검사서 의사 서명 60일 미만 규정 일시적 면제

이민국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신체검사 보고서 (Form I-693)에 검진 의사의 서명일이 영주권 신청서 (Form I-485)를 포함한 이민용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60일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일시적 면제는 의사 서명일이 영주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작성 완료된 Form I-693 을 이민용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고 영주권 수속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시적 면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이민 수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신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귀화 자격 요건을 갖춘 영주권자는 N-400 양식을 제출하여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만 18 세 이상
- 영주권자가 된 지 5년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3년)이 지났고, 이 기간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
- 범죄 기록 등의 도덕적 문제가 없어야 함
- 기본적인 영어실력
-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상식

시민권 신청은 5년 또는 3년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하실 수 있으며,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되었거나 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화 시험은 기본적인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영어 시험과 미국 역사와 정부 시험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어 시험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당시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신청 당시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신청 당시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미국 역사와 정부 시험 관련해 특별한 고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해당 사항으로 인해 영어 시험을 면제 받으신 경우에도 미국 역사와 정부 시험은 보셔야 하지만 모국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인터뷰에 통역사를 대동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시험을 보기 어려우신 경우 N-648 양식을 제출하여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Practice Highlight-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취업 이민 2순위 영주권 청원시, 미국의 국익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스폰서와 노동허가서 요건을 면제해 주는 규정입니다.

NIW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 그리고 특출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음을 신청인의 논문, 저술서, 특허, 수상 등의 증거로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와 경험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수속입니다. NIW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원하시면 [eval@dream-law.com](mailto:eval@dream-law.com)로 Curricula Vitae를 보내주십시오.

## 이민국 주소 변경 신고

미국에 거주 중인 모든 외국인은 이사 후 1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를 이민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신청은 [온라인](#)에서 AR-11, 외국인 주소 변경 양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양식을 제출하면 현재 보류 중인 모든 신청서, 청원서, 또는 요청서에 있는 주소가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계류 중인 케이스가 있는 시민권자의 경우에도 이민국에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자에게 재정보증을 해준 시민권자는 이사 후 30일 이내에 [I-865](#), 스폰서 주소 변경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으로부터 모든 서신 및 혜택을 적시에 받고 주소 변경과 관련된 케이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민국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체국 주소 변경 신청으로는 이민국에 계류중인 케이스들의 주소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 영주권 조건 해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영주권 취득시 결혼한 지 2년이 안 되셨다면, 2년 기한의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을 해제하고 10년 기한의 일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영주권 만기되기 전 90일 이내에 I-751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조건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다면 영주권자 신분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추방 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여 만료가 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늦게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같이 접수해야 합니다.

조건 해제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받는 I-797 접수증은 임시 영주권 기한을 18개월 동안 연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2년 조건부 기간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사기 결혼을 적발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신청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이 진실된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의 예로는 자녀, 공동자산, 세금보고, 보험, 여행기록, 사진 등이 있으며, 편지나 문자, 또는 지인들의 증언문을 같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I-751 양식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 또는 사별의 경우 공동 제출 요건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별거,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복잡해진 조건해제의 경우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건해제 신청서를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 H-4, E, L 비이민 비자 배우자의 노동허가와 노동카드 자동 연장 관련 이민국 정책 업데이트

이민국은 H-4, E-1, E-2, L-2 등 H-4, E, L 비자 배우자들의 노동카드 자동 연장과 E 와 L 배우자들의 노동허가에 관한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행했습니다. 이 지침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즉시 유효합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H-4, E, L 비자 배우자 소지자들의 배우자가 기존 노동카드 만료일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대로 접수했고, I-94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노동허가와 소지한 노동카드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 됩니다.

따라서, 만료되지 않은 I-94, 제 때에 접수된 노동카드 연장을 신청했음을 보여주는 I-797C (이민국 접수증), 그리고 기존 노동카드, 이 세가지 서류를 미국 내에서 취업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 취업 자격 증명서 (I-9) 기입시 제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E 와 L 비자 배우자들의 경우,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한 신분으로 인정하여, 더이상 노동카드를 취득하지 않고도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물 노동카드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I-765 신청서를 제출하여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FAQs

Q: 노동카드 연장 신청을 했는데 아직 새 노동카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떡하나요?

A: 아래 조건들에 모두 해당될 경우, 최대 180 일 동안 자동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카드 만료일 전에 늦지 않게, 노동허가 연장을 위해 I-765 양식을 제출하였고, 현재 I-765 신청서가 보류 중이고;
- 소지한 기존 노동 카드의 자격 카테고리와 I-797C (이민국 접수증)에 나온 카테고리가 같으며;
- 노동카드의 자격 카테고리가 다음 중 하나일 경우: A03, A05, A07, A08, A10, C08, C09, C10, C16, C20, C22, C24, A12 또는 C19. 카테고리 A17, A18, 또는 C26 으로 I-765 연장 신청을 한 일부 직원들도 자동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카드 자동연장에 해당되는 카테고리 확인은 이민국 관련 웹사이트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일자들

- 만 2 세 이상의 모든 입국자: 2021년 12월 6일부터 미국 입국 전 하루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필요
- 영주권 신청자: 2022년 9월 30일까지 신체검사서에 의사서명일 규정 면제
- 영주권자: 5년 (또는 3년) 거주기간 끝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서 접수 가능
- 미국 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이사 10일 안에 AR-11 제출
- 조건부 임시 영주권자: 영주권 카드 만기일 90일 이내에 I-751 제출

## 유용한 사이트들

[이민국 웹 사이트](#)

[이민국 케이스 조회](#)

[이민국 처리속도](#)

[영주권 신체검사 병원 검색](#)

[시민권 시험 교재](#)

[비자 문호](#)

[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